

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0. 6.

제 출 자 : 서 초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-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상이자의 등급이 2000. 1. 1부터 1등급(7급) 추가 신설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고,
- 2000년 ASEM회의, 2001년 한국방문의 해,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역점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세제 감면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골자

가.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(안제2조제2항)

- 보철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 대상에 신설된 7급 상이자를 포함

나.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(안제25조의3)

-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·통보된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연도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각각 50% 경감
- 정비완료 당해연도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경감세액은 각각 납세의무자별로 1,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
- 적용시한 : 2002년 12월 31일까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세법 제7조(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)
-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(상이등급의 구분)
- 서울특별시육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2조(광고물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라. 기타사항
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- 입법예고(2000. 8. 2~8. 21)결과,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시초구세감면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시초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) 제2항 본문중 “6급”을 “7급”으로 한다.

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3(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) ①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·통보된 건축물(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에 대하여 당해연도 재산세와 당해 건축물 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당해연도 사업소세를 각각 50% 경감한다. 다만,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 5년이내에 재정비대상이 되어 통보된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가 완료·통보된 이후에 감면하되, 정비완료 당해연도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는 경감세액을 환부한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당해연도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경감세액은 각각 납세의무자별로 1,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- ② 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,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- ③ (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적용례) 제25조의3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 다만, 경감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국가유공자등에우및자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·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·비속과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국가유공자의 형제·자매(이하“국가유공자등”이라 한다)의 명의로 등록(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)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. (단서생략)</p>	<p>제2조(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-----7급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<신설></p>	<p>제25조의3(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) ①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·통보된 건축물(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대하여 당해년도 재산세와 당해 건축물 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사업소세를 각각 50% 경감한다. 다만,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5년이내에</p>

현행	개정안
	<p>재정비대상이 되어 통보된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정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가 완료·통보된 이후에 감면하되, 정비완료 당해연도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는 경감세액을 환부한다.</p> <p>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당해연도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경감세액은 각각 납세의무자 별로 1,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</p>